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EXIMBAY가 운영하는 해외 간편 결제사(Wechat pay, Alipay 등)결제서비스를 위하여 ㈜엑심베이 및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가맹점"이란 주식회사 "EXIMBAY"와 결제 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 2 "결제사"란 Wechat pay나 Alipay 등 계정 기반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해외간편결제 업체를 말합니다.
- 3 "간편결제서비스"란 결제사 회원이 한국내 가맹점에서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결제사 회원"이란 결제사의 결제 서비스 계정에 사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5 "신용판매"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결제사 회원이 제시한 결제서비스 방식으로 결제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 6 "EXIMBAY"란 주식회사 엑심베이를 말하며 결제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이 신용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됩니다.
 - 가맹점과 결제사간 승인 중개
 - 가맹점과 결제사간 매입 중개

제3조 (본 계약의 적용)

가맹점은 결제사 회원이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이 계약에 따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는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금전채무의 상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3 예금, 적금 및 부금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6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8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9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10 선불카드 및 상품권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제4조 (거래 한도)

- 1 EXIMBAY는 결제사의 정책 및 인터넷 환경 등에 따라 고객당 1회/1일/월간 거래한도, 가맹점 월간 거래한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XIMBAY는 사전에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 2 EXIMBAY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 법령 및 EXIMBAY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EXIMBAY는 사전에 제18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허위매출, 현금용통 거래가 의심되는 등 EXIMBAY가 거래한도를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용판매 방법)

- 1 가맹점은 결제사 회원이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EXIMBAY와 협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거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가맹점은 거래승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거래일자 등을 매출전표에 출력하여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EXIMBAY와 협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이 매출전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래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 5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 6 매출전표상의 금액 또는 제2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매출전표를 폐기하고 재 작성하여야 합니다.
- 7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전표를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 8 가맹점은 유호하게 작성된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의 "회원용"은 결제사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 (신용 판매 시 준수사항)

- 1 가맹점은 정상적인 결제사 회원에게 결제서비스 거부 또는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가맹점은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가맹점은 가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5 가맹점은 결제사 결제서비스 거래를 대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6 가맹점은 결제사 결제서비스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매출전표의 접수)

- 1 가맹점은 신용판매 후 매출전표는 판매에 따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고, EXIMBAY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합니다.
- 2 EXIMBAY는 회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가맹점에 매출전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거래증빙 자료의 접수가 지연되거나 부실할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 중 분쟁 중인 거래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 1 EXIMBAY는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신용판매에 대하여 제9조 제1항에 의한 신용판매대금 지급 기일에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EXIMBAY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EXIMBAY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가맹점은 EXIMBAY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EXIMBAY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4 EXIMBAY는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제3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에 알리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합니다.
- 5 EXIMBAY는 신용판매대금 지급 시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제13조에서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곱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취소 매출전표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 1 EXIMBAY는 거래일로부터 "결제사"의 영업일 기준으로부터 가맹점가입 신청서 정보에 따라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EXIMBAY의 리스크 관리 목적 등에 따라 별도의 부속계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영업일은 한국을 포함하여 결제사 소재지 국가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공휴일: ex 중국결제의 경우 중국).
- 2 신용판매대금: 거래승인된 거래 건에 대하여 결제사로부터 매입이 완료되어 그 대금을 EXIMBAY가 지급받은 대금을 말합니다.
- 3 EXIMBAY는 가맹점에서의 매출 취소 또는 결제사 회원의 민원 제기 증가 등으로 손실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XIMBAY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18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4 제2항에 따라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 받은 가맹점은 EXIMBAY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EXIMBAY는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대금의 환입 및 상계)

- 1 EXIMBAY는 가맹점으로부터 취소거래가 접수될 경우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이 부족하여 공제가 불가할 경우 가맹점은 취소거래대금을 직접 EXIMBAY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에 의하여 EXIMBAY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EXIMBAY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거래취소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EXIMBAY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EXIMBAY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대금의 지급 보류)

- 1 EXIMBAY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국제채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채납처분을 송달 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 EXIMBAY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XIMBAY는 제18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1.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의 신용판매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계약 시에 가맹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 3 EXIMBAY는 제14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EXIMBAY가 가맹점에 이미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 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 4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사용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IMBAY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최장 30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5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신용판매대금은 가맹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EXIMBAY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EXIMBAY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EXIMBAY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 결제사 회원 계정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거래
- 2 결제사 계정이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 3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EXIMBAY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제13조 (가맹점 수수료율)

- 1 수수료율은 Wechat pay _____%, Alipay(Alipay+) _____%으로 합니다(VAT 별도).
- 2 EXIMBAY는 결제사의 정책 변경 등 수수료 원가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신용상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XIMBAY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3 제2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사실을 통보 받은 가맹점은 EXIMBAY에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EXIMBAY는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회원과의 분쟁)

- 1 결제사 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EXIMBAY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EXIMBAY는 회원제·다단계판매·비대면 거래 가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결제사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 1 EXIMBAY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XIMBAY는 가맹점 자격정지 또는 가맹점 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18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EXIMBAY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5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계약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EXIMBAY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번하거나 1년 이상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EXIMBAY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 받은 경우
 5.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6.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 EXIMBAY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 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EXIMBAY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 EXIMBAY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EXIMBAY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EXIMBAY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4. EXIMBAY가 일방적으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 4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EXIMBAY와 가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16조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 등)

- 1 EXIMBAY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과 결제사 회원 간에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EXIMBAY는 가맹점의 정보를 결제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결제사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EXIMBAY는 가맹점에 결제사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정보유출금지)

- 1 가맹점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결제사 회원정보에 대하여 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가맹점은 결제사 회원과의 신용판매, EXIMBAY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결제사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이 POS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 'POS 단말기 보안표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IMBAY는 가맹점이 동 보안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POS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5 EXIMBAY는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4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수하지 않아 결제사 회원정보 유출되어 EXIMBAY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6 제1항은 이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18조 (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 1 EXIMBAY는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 후 해당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를,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거래한도 등을 명시하여 본 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 드립니다.
- 2 EXIMBAY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 시 각 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 3 가맹점은 EXIMBAY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EXIMBAY에 서면, 전화, EXIMBAY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EXIMBAY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발생한 손해에 대해 EXIMBAY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가맹점 표시물)

- 1 가맹점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EXIMBAY가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시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시물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시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계약 위반시의 책임)

- 1 EXIMBAY와 가맹점은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이 이 계약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EXIMBAY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이 계약은 가맹점과 EXIMBAY가 기명날인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3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계약변경)

EXIMBAY와 가맹점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 종료일전이라도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1 EXIMBAY는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전 합의를 통하여 부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4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EXIMBAY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EXIMBAY 서명란]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1101호

대표자 김 준 현 (인)

[가맹점 서명란]

가맹점명

사업장주소

대표자 _____ (인)